

제199회 국회

국회 본회의 의회의록

제 4 호

국회 사무처

1998년 12월 2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7.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8.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9.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2.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1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16.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7.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18.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9.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0. 상품권법 폐지법률안(대안)
21.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2.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23.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24.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
25.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9.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2.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34.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5.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6.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7. 인장업법 폐지법률안(대안)
3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39.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0.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1.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43.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44.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5. 농업·농촌기본법안
46.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7.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8. 습지보전법안(대안)
4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50.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51.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52.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5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5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55.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56.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57.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58.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59.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60.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6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63.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6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6.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67.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68.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69.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7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1.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7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3.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74.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7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77.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78.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79.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80.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81.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82.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부의된 안건

o 의원신상발언	5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5. 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정부 제출)	8
7.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8.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9.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8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12.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1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16.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17.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8.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19.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20. 상품권법 폐지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21.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22.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23.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24.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25.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정부 제출)	12
27.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2
2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2
29.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2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3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32.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3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34.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35.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36.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37. 인장업법 폐지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3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39.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40.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41.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4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
43.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44.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
45. 농업·농촌기본법안(정부 제출)	19
46.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9
47.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48. 습지보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1
4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1
50.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1.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2.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5.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6.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7.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8.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59.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60.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3.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6.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7.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8.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9.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7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71.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7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73.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74.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7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77.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25
78.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79.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80.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81.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중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 발의) 29

82.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 발의) 29

(14시08분 개의)

○의장 박준규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임종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준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80여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법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불철주야하고 이런 많은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개의 중이라도 성원에 지장이 없으시면 법사위원회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원신상발언

(14시11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 신청이 있기에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익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 조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섭니다.

오늘이 저의 처녀발언입니다. 처녀발언을 신상발언으로 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체포동의안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12월 15일 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러한 내용하고도 좀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 5월 23일 방배동에 있는 우리 민자당사 매각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매각 당시 계약서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서가 가계약서가 있고 본계약서가 있습니다. 가계약서는 본계약을 하기 전에 토지거래신고를 구청으로부터 득한 뒤에 본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약 4조2항에 보면 ‘하자담보책임 등’이라고 해 놓고서 ‘부동산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도시계획 저촉, 기타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 등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갑은 저희 당이요, 을은 매수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약서에도 분명히 써 있고 또 본계약서 4조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각한 것이 제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생겼는가 하니 그러니까 매각을 95년 5월에 했는데 95년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 측에서는 제가 매수인의 앞에 계시는 브로커로부터 1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받고 그 다음 해 96년 5월에 제가 갚은 것으로 이렇게 검찰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95년에 매각을 하고 96년 총선 때쯤인가 그렇게 됐는데 매수인 앞에 있는 브로커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선물보따리라고 하면서 총선 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물건들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선물이라고 하면서 책상 뒤에다 놓고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간 뒤에 열어 보니까 돈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내일 아침에 좀 와 달라’ 하니까 그 부인이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지금 안 계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에 꼭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밑에 와 있다고 전

화가 와서 제가 그 돈을 누가 볼까 봐 들고서 가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어렵게 만들은 것인데 그동안에 가격도 싸게 해 주고 그래서 보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등의 받을 이유가 없다’ 하고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받았으면 내일 즉시 돌려준 것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이 선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놓고 가라고 했다가 보니까 돈이었기 때문에 즉시 돌려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95년 11월에서부터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받고 96년 5월인가 6월에 그것을 도로 돌려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이 그 매수인의 앞잡이로 있는 박정기라고 하는 한 친구가 매각한 지는 95년인데 금년 9월인가 10월인가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조 의원님, 그때 제가 1000만 원 준 것 기억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이 있어야 기억할 것 아닙니까? ‘무슨 기억을 합니까, 무슨 돈을 주었습니까?’ 하니까 그때 ‘매각할 때 1000만 원 주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받은 사실이 있어야지 제가 받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하고 나가더니 검찰청에서 그 사람한테 제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매수했다면 공무원 대상이 있을 텐데 대상자를 불러와라 이것입니다. 그 대상자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누구한테 로비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무슨 힘으로…… 그때는 서울시가 국민회의, 시장도 국민회의요, 대다수 의원들이 국민회의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대학교수이고 한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 박준규 마이크 중간에 꺼져서 미안합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시18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3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4항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국창근 정무위원회 국창근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석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엽제 환자의

결정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방부의 통보자료 및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만을 근거자료로 인정하던 것을 신청인이 제출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중 병명란에 최종진단한 경우에도 근거자료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경우 외에는 취업보호 상한연령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법정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각 단체의 지부설립 신고의무 등 규제사무의 일부를 폐지 또는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복지공단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의 임원 등 민간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총회에서 본부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정부 제출)
- 7.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8.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9.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2.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6.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4시28분)

○의장 박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8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9항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10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12항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13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4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16항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마포 갑구 출신이신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박명환 재정경제위원회 박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등 11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채권 및 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자금의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주택’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할 경우 주택저당채권 등 채권유동화대상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채권유동화대상의 확대를 위해서 1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서의 주택저당채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제품 중 일부를 민간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보부사채신탁업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자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그 결정의 취지를 수용하여 채권자 또는 부동산소유자 등 경매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관련법안의 유보에 따라서 그 시행일을 1999년 4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여신 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에 대한 경영계약적 규제를 완화하고 수시 공시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업의 최저자본금을 낮추고 신용정보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일부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업의 기업화 추세에 맞추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림수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농림수산업자의 상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금전채무를 추가하여 농어민 등의 보증편의를 제고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운용실적이 없는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신탁회사가 정관 등을 변경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유자금 운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 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박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
 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
 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
경제위원장 제출)
- 19.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
위원장 제출)
- 20. 상품권법 폐지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21.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
위원장 제출)
- 22.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4시38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7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선물거래
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품권
법 폐지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사채등
등록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재
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중랑을구 출신이신 김
충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김충일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중랑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
정법률안(대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
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
권의 매매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
회가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
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증
권거래제도 전반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시장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미래의 수
익이나 경영전망 등과 같은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신규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둘
째, 협회중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상장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협회등
록법인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하도록 하여 우선주
발행한도·주식배당한도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
하고 일반공모증자·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발행
및 자기주식의 취득 등을 허용하며 셋째, 공시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
거나 공시대상서류에 허위의 기재 등을 한 경우
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 5억 원의 범위 내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넷째,
증권회사 등 증권관계기관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력기준을 폐지하는 등
영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
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협회중개시장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협회등록법인에 새로운 추가부담이 되는 상근감사의 선임 등 일부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둘째, 고객예탁금을 예치받은 예치기관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법률에서 명시하는 한편 셋째, 이번 개정의 취지가 예측정보공시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외국 의 운용 예를 고려하여 면책요건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공시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분기보고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다른 소멸시효규정과 형평을 맞추고 피해자의 청구권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다섯째, 증권거래소 이사장 및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한 승인권 폐지문제는 단순히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법 및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과의 관계에서 당해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에 준거해야 할 것이므로 현행의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가 제안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보고·신고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신탁협회에 투자신탁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투신사 간 자금지원 등을 통한 수익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투신사 임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투자신탁협회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권을 폐지하며 둘째,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신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건전한 자산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물거래의 방법 또는 한도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셋째, 투자신탁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 간 순 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넷째, 투자신탁협회에 투자신탁회사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이 부족한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

원을 통한 수익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선물거래소 감사의 선임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선물업의 일부 양수·도·시사전인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물투자기금업을 폐지하는 등 선물업에 대한 제도정비를 통해 선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선물거래소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선물거래위탁자 보호를 위해 회원보증금에 대한 위탁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며, 선물거래업자의 고객예탁금의 분리보관의무 등을 신설하여 선물거래 시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셋째, 선물투자기금업을 폐지하고 이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기능통합 및 선물시장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상품권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동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사채등록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하여 일정한 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공사채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조건에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등록채권자의 등록말소 청구를 제한하여 채권실물발행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계획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 승인 등을 폐지하고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상품권법 폐지법률안(대안)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품권법 폐지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

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정부 제출)

27.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9.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

위원장 제출)

(14시48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23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24항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25항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26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제27항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28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29항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지대섭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집행관서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예비비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셋째, 각종양관서별로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추가하고 둘째, 이

제도의 객관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를 지정하는 제도를 규제폐지 차원에서 폐지하고 둘째,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토록 하여서 개인의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인지판매인의 지정제도를 개편하여 수입인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의 계약체결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인지판매인의 요건에 있어서 그의 자격과 신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현재 법적 뒷받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원 확보의 곤란 등 조합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30인 이상의 소비자는 발기인이 되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조합은 농수산물 및 환경물품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조합은 재고물품의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정치관여 금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 등 타 입법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소관 상품권법등의규제폐지등에 관한 법률안 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부분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별도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9일 김병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98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01년도부터는 의무예탁을 폐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12일 김병태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경제부소관 상품권법등의규제폐지에 관한 법률안 중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부분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양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을 성안하여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명시하고 둘째,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의무규정 등을 삭제하며 셋째,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한 의무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지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2.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4.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5.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시59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0항을 상정합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31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32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3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34항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5항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천 남동 갑구 출신이신 이윤성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윤성 행정자치위원회 인천 출신 이윤성 의원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제출한 행정자치부소관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폐지하고 동 일괄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법률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부금품을 모집하던 자가 모집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모집을 중단·종료한 때에는 모집허가권자에게 모집상황 및 그 결과 등을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모집자의 모집허가서 게시, 기부금품 모집 할당, 호별방문 모집금지 등 모집자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여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원안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허가권자의 허가취소권을 삭제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모집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수법인으로 한국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하였으나 옥외광고사업에 관해서 복수의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불법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대상을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규정해서 행정처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정부원안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있으나 법의 예방적 효과를 감안해서 현행규정을 존치하고 기타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첫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 당해 군수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도지사가 농어촌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 사업계획의 재원이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충당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지방양여금을 당해 군수에게 양여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 국가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업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원안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부절차적 규정은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행규정대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지번변경·지적공부반출·지적공부의 제작성 및 축척변경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이양토록 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원안은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조사해서 주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상의 편의보다 미등기 토지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판결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봐서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훈장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를 폐지해서 정부와의 계약으로 훈장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민훈장 또는 국민포장을 수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근정훈장 또는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이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6.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7. 인장업법 폐지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9.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0.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1.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5시08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6항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37항 인장업법 폐지법률안(대안), 제38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40항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1항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산 서구 출신이신 정문화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문화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화 의원입니다.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인장업법 폐지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6개 법안 역시 정부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제출한 행정자치부소관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 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이를 폐지를 하고 동 일괄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법률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의 서면신고 시 지금은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을 한 사람으로 완화해서 인감신고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원안에서는 전자주민카드발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시행일을 연기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는 개정사항으로 보아 현행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박준규 의장, 김봉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인장업법 폐지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장업법은 인장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원안대로 동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의 열람제한사항 중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업무 등을 삭제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열람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를 폐지해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도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변경해서 시장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한도액 산정에 의한 도급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체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을 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 강제규정을 삭제해 임의설립규정으로 전환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인회원의무가입제를 폐지하여 임의가입제로 개선하여 의무가입에 따른 회비납부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 등입니다.

정부원안에서는 검정을 받지 않은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 수리·교체·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소방용 기계·기구가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안전이 요구되

는 기계임으로 무검정품에 대한 조치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고 아울러 개별조항에서 정했던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규정을 변경신고규정에 수정 정리함으로써 조문의 일원화를 기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구지역 방재계획의 시·도지사 승인제도를 폐지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 거주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에게 대한 시·도지사 등의 응급조치종사명령제도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재해응급조치명령제도를 이 법에서는 폐지하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원안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징후를 발견한 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이 조치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재해의 조기발견과 조기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아 존치시키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의 업무영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원안에서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나 이는 불특정 다수인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규정을 존치하여 계속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인장업법 폐지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장업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3.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4.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5시17분)

○부의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42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 광진을 출신의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추미애 서울 광진을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추미애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8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도선 운항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의 의무 및 안전운항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유·도선사업자의 선원변동 및 선박 출입항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선원의 증원·교체 및 다른 유·도선사업자와의 공동운항명령권 등을 폐지하며 셋째, 유·도선운항약관에 대한 인가제 및 도선운임에 대한 승인제를 각각 신고제로 전환하여 유·도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에서 유·도선사업자가 휴업·폐업 하거나 도선의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도선에 한해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신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둘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평수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도선에 대하여 기상특보의 하나인 주의보 발효 시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고 유·도선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며 사고발생 시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안전운항조치 안전교육 및 사고발생보고 등 현행 규정을 존치토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동년 11월 3일 이국현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98년 6월 19일 이성재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동년 10월 30일 또 12월 2일 각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법 개정법률안을 상정,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 5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본면허를 받기 전에 보아야 하는 응용학과시험을 폐지하며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제도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명칭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장)
-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농업·농촌기본법안(정부 제출)
46.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시24분)

○부위원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45항 농업·농촌기본법안, 의사일정 제46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경북 상주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상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중요 법률안으로서 농업·농촌 발전에 중요한 기준이 될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복권을 제도화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법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본 제정법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농촌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미치게 될 영향 등 중차대성을 감안해서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사과정에서 학계, 생산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인도 다른 산업종사자와 같이 균형 있는 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 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한 식량재고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식량안보를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유통개선의 내용에 누락되었던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해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농업에 대한 피해발생을 깊이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의 대상범위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6일 김종배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자금, 녹색자금입니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녹색복권을 발행하는 것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서 이를 1998년 11월 2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규제완화차원에서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 폐지, 보전임지의 분할제한규정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 중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은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서 목재생산 등 경제적 기능 외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등 환경적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서 산림환경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 리우환경선언에서도 산림의 수자원보전,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흡수, 토양보전 등을 위한 추가재원의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예산 중 산림투자는 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액마저 산림의 개발 및 병충해 방제 등 경제적 분야에 집중되어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 복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동 자금을 충당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일에 국민적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야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 및 보전임지의 분할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업·농촌기본법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2분)

○부위원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47항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 영등포 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명섭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입니다.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국립의료원이 점유·소유하고 있는 일반회계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립의료원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앞으로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립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5조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1998년 11월 30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8년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습지보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0.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1.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2.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6.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7.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8.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9.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0.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36분)

○부의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48항 습지보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미경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입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된 습지보전법안(대안)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지보전법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용석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발의된 갯벌보전특별법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습지보전법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 안에서는 모래, 자갈의 채취 금지 등 일정한 행위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김종배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김종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건의 위원회안은 환경부소관 각종 규제를 폐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환경부소관 먹는물관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별 법률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호소수질보전구역 안에서 설치·운영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특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설 신고 시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입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 변경대상을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입니다.

다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를 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수출입 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를 교부하던 것을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입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폐기물예치금·부담금과 중복성격의 청소원인 자부담 출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입니다.

다음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수도관련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위하여 한국수도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시행시기를 현행 1999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검사결과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의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습지보전법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습지보전법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6.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시45분)

○부의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6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방용석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용석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9월 25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12월 3일, 기타 나머지 법률안은 98년 11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둘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민간기업에도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셋째,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운행자동차의 소음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제도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검사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넷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불박이장의 설치 등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입니다.

다섯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를 중 개정법률안은 생활하수의 처리가 시급한 상수원지역 등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와 행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증명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8.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1.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3.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7.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5시51분)

○부의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67항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천 서 출신의 존경하는 조한천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조한천** 환경노동위원회의 조한천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상 11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방용석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는 외에도 별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능검정 외에 중복적인 규제사항을 폐지토록 현행 제35조 제2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요인들의 인과관계 내지는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3조의2에 신설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등 5개 법률을 일괄 정비하기로 한 노동부소관 공인노무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개별법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안 제24조에서 공인노무사회의 강제설립규정을 임의화하고 안 제24조의2에서 개업노무사의 공인노무사회의 가입의무를 삭제하는 것 등이며 다음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주지의무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노동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 해고 신고, 서류보존의무 등을 삭제하는 것 등이고 다음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수교육의무, 등록 및 갱신등록의무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건강진단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건강진단을 행한 건강진단기관에도 알려 주도록 하고 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 기타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에서 「진폐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한 노동부령 위임내용의 예시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고 보호구를 사용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분진의 발산방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제의 신고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무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도로 전환되면서 종래 허가제하에서의 허가요건을 신고요건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하도록 하였고 둘째, 부칙 제2조에 현행 근로자의 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에 의해 설치된 인력은행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노동연수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 기능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이관하려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 중 상근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하려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 중 상임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하려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9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은 99년 1월 1일부터 직업훈련기본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직업훈련분담금제도가 폐지되고 동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 직업훈련촉진기금역시 폐지하며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8.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3분)

○부의를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78항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윤수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하천공사

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에서는 하천연안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안구역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홍수피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하천개수사업이 끝날 때까지 동 제도를 존치시키되 정부도 기 지정된 31개소의 연안구역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개별적인 해제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하천점용허가 시 개정안에서는 부관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행법과 같이 부관을 존속시키는 한편 운하에 관한 정의규정을 수정하였고 셋째, 부칙의 타법 개정규정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법에 통합하고 도로정비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부지 확보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체적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협의내용에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을 법에 예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동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이나 통행료의 징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따라 부칙 제3조제1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

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지구·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지안의 조정을 완화하는 규정은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녹지보존을 위해서도 현행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대형건축물의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규정은 적용대상지역을 특별시 및 광역시에만 적용하고 도지역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대형건축물의 규모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건축물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대책에 건축폐자재 활용 대책을 포함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률안은 1998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8일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 발의)

82.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 발의)

(16시10분)

○부의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8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광주남 출신의 존경하는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장대리 임복진 정보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하여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개칭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행정부와 같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검직 직원에 대한 국가 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본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3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도 있게 이를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 의원(269인)

강 경 식	강 삼 재	강 성 재	강 용 식
강 종 희	강 현 욱	구 천 서	국 창 근
권 기 술	권 영 자	권 오 을	권 익 현
권 정 달	권 철 현	길 승 흙	김 경 재
김 고 성	김 광 수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수	김 기 춘	김 길 환	김 덕

김 덕 룡	김 도 언	김 동 욱	김 동 주
김 명 규	김 명 섭	김 명 윤	김 문 수
김 민 석	김 범 명	김 병 태	김 봉 호
김 상 우	김 상 현	김 선 길	김 성 곤
김 수 한	김 영 구	김 영 배	김 영 일
김 영 준	김 영 진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환	김 운 환
김 원 길	김 인 곤	김 인 영	김 일 주
김 재 천	김 정 수	김 정 숙	김 종 배
김 종 학	김 중 호	김 중 위	김 진 배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철	김 충 일
김 충 조	김 칠 환	김 태 식	김 태 호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허 남	김 현 욱
김 형 오	김 호 일	김 홍 신	김 홍 일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진	노 기 태
노 무 현	노 승 우	류 선 호	류 재 건
류 종 수	류 홍 수	맹 형 규	목 요 상
박 관 용	박 광 태	박 구 일	박 명 환
박 범 진	박 상 규	박 세 직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신 원	박 우 병	박 원 흥
박 정 수	박 정 훈	박 중 근	박 중 우
박 중 응	박 주 천	박 준 규	박 찬 주
박 태 준	박 헌 기	박 희 태	방 용 석
배 중 무	백 남 치	백 승 홍	변 용 전
변 정 일	서 상 목	서 석 재	서 정 화
서 정 화	서 청 원	서 한 샘	서 훈
설 훈	손 세 일	송 현 섭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기 남	신 영 국	심 정 구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재 홍	안 택 수
양 성 철	양 정 규	어 준 선	오 세 응
오 양 순	오 용 운	오 장 섭	원 유 철
유 용 태	윤 원 중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희	이 건 개	이 경 재	이 국 현
이 규 정	이 규 택	이 궁 규	이 기 문
이 길 재	이 동 복	이 동 원	이 미 경
이 부 영	이 사 철	이 상 득	이 상 만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현	이 석 현
이 성 재	이 성 호	이 세 기	이 수 인
이 신 범	이 양 희	이 영 일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용 회	이 원 범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응 선
이 인 구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무	이 중 재	이 태 섭	이 택 석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형 배	임 복 진	임 인 배

임진출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장영철 장을병 장재식 전석홍
 전용원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상구 정상천 정세균
 정영훈 정우택 정의화 정일영
 정창화 정한용 정형근 정호선
 정희경 조성준 조세형 조순
 조순승 조순형 조영재 조익현
 조진형 조찬형 조한천 조홍규
 주진우 지대섭 차수명 채영석
 천정배 최선영 최연희 최재승
 최희준 추미애 하경근 하순봉
 한승수 한영수 한영애 한이현
 한화갑 함석재 함종한 허남훈
 허대범 현경대 홍문종 홍준표
 황규선 황낙주 황성균 황우여
 황학수

○청가 의원(27인)

강재섭 강창희 김무성 김복동
 김영선 김일윤 김중필 김찬진
 박근혜 박상천 박성범 박세환
 박철언 신낙균 신상우 신영균
 윤한도 이상희 이재명 정몽준
 정석모 정재문 제정구 조웅규
 천용택 최형우 홍사덕

○출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규성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
 농림부장관 김성훈
 환경부장관 최재욱
 건설교통부장관 이정무

○출석 정부위원

국가보훈처장 김의재
 보건복지부차관 최선정
 환경부차관 정진승
 노동부차관 안영수
 건설교통부차관 최중찬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이건개	변웅전	자유민주 연합	1998. 12. 24
	변웅전	이건개	자유민주 연합	1998. 12. 28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신낙균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노동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2. 23
정호선	환경노동	과학기술 정보통신	국민회의	12. 23
천용택	재정경제	환경노동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2. 24
정세균	환경노동	재정경제	국민회의	12. 24
신낙균	환경노동	보건복지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2. 29
조성준	보건복지	환경노동		
천용택	환경노동	재정경제		
정세균	재정경제	환경노동		
이강희	환경노동	과학기술 정보통신		
김성곤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노동		
조성준	환경노동	보건복지		
신낙균	보건복지	환경노동		
정세균	환경노동	재정경제		
천용택	재정경제	환경노동		
김성곤	환경노동	과학기술 정보통신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2. 29
이강희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노동		

○의안 제출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2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2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윤환) 체포동의의 건

국회의원(황낙주) 체포동의의 건

국회의원(조익현) 체포동의의 건

(이상 3건 12월 28일 정부 제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

(12월 28일 정무위원장 제출)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상품권법 폐지법률안(대안)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5건 12월 29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인장업법 폐지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4건 12월 28일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2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습지보전법안(대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18건 12월 29일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 17일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28일 정무위원장 보고)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12월 29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9월 5일 정부 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9월 23일 정부 제출)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6일 정부 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12월 29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 1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8일 정보위원장 보고)
 이상 13건 원안대로 의결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8일 정부 제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이상 4건 11월 27일 정부 제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2월 2일 정부 제출)
 (이상 8건 12월 29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6일 정부 제출)
 (12월 28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농업·농촌기본법안

(1997년 11월 27일 정부 제출)
(12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97년 11월 28일 김병태 의원 외 20인 발의)
(12월 29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월 11일 정부 제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2월 2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12월 29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2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이상 20건 수정 의결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997년 11월 13일 김홍신·신낙균·이재선·황성균 의원 외 23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월 26일 이석현·김원길·한화갑·김민석·국창근·김근태·안동선·채영석 의원 외 96인 발의)
(이상 3건 12월 28일 정무위원장 보고)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3월 12일 김병태·정한용·이기문·이상만·박신원·여준선 의원 외 16인 발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4월 9일 김병태·조한천·변웅전 의원 외 21인 발의)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7일 정한용·박정훈·한화갑·김근태·김인영·김충일·김한길·이재명·장재식·정세균·천정배·한영애 의원 외 90인 발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7일 정부 제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4일 김원길·박정훈·김근태·김인영·김충일·이재명·임채정·장재식·정세균·정한용·한영애 의원 외 26인 발의)

재정경제부소관상품권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12월 29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1997년 10월 31일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1997년 11월 3일 이국헌 의원 외 32인 발의)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6월 19일 이성재·이재선 의원 외 22인 발의)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30일 정부 제출)

행정자치부소관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12월 2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12월 28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7월 6일 김종배·김종하·김홍신·박관용·박세직·신상우·이규정·이미경·이신범·이재오·제정구·조웅규·최형우·황규선·김상현·김성곤·김원길·박상규·박정훈·박찬주·안동선·양성철·류재건·이길재·이성재·장영달·장재식·조성준·조순승·정한용·김현욱·정일영·지대섭·박범진·서석재·장을병·이강두 의원 발의)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습지보전법안

(1997년 4월 16일 정부 제출)

갯벌보전특별법안

(10월 15일 방용석·조한천·한영애·이미경·강중희 의원 외 18인 발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월 5일 정부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월 14일 김종배 · 김상현 · 이부영 · 김현욱 · 김중하 · 안상수 · 이신범 · 이윤성 · 이재오 · 조용규 · 정형근 · 최형우 · 황규선 · 김홍신 · 이규정 · 김성곤 · 김원길 · 박상규 · 박정훈 · 박찬주 · 안동선 · 류재건 · 이길재 · 이성재 · 장영달 · 장재식 · 조순승 · 정한용 · 정일영 · 조영재 · 지대섭 · 장을병 · 박범진 · 권정달 · 배종무 · 김명규 · 윤철상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5일 방용석 · 강종희 · 김종배 · 이강희 · 이미경 · 조성준 · 조한천 의원 외 23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1일 정부 제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3월 14일 김종배 · 김무성 · 김중하 · 김홍신 · 박세직 · 안상수 · 이규정 · 이부영 · 이신범 · 이재오 · 정형근 · 제정구 · 조용규 · 최형우 · 황규선 · 김상현 · 김성곤 · 김원길 · 박상규 · 박정훈 · 박찬주 · 안동선 · 양성철 · 류재건 · 이길재 · 이성재 · 장영달 · 장재식 · 조순승 · 정한용 · 김현욱 · 정우택 · 정일영 · 조영재 · 지대섭 · 박범진 · 서석재 · 장을병 의원 발의)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광역상수원보호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1996년 7월 16일 박찬주 · 김중하 · 박범진 · 박세직 · 신상우 · 안상수 · 이재오 · 조용규 · 최형우 · 김경재 · 김성곤 · 김원길 · 김종배 · 박상규 · 박정훈 · 김상현 · 안동선 · 이길재 · 이윤수 · 장영달 · 장재식 · 조성준 · 조순승 · 정일영 · 조영재 · 지대섭 · 김홍신 · 이규정 · 이부영 · 장을병 · 제정구 · 권정달 의원 발의)

팔당 · 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1996년 12월 4일 이규택 · 정영훈 · 이해구 · 박헌기 · 황규선 · 김길환 · 이강희 · 권철현 · 김문수 · 홍준표 의원 외 143인 발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

(1997년 6월 5일 정부 제출)

상수원수질관리및개선에관한특례법안

(1997년 6월 19일 김허남 의원 외 22인 발의)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8월 25일 김용갑 의원 외 100인 발의)

환경부소관먹는물관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안

노동부소관공인노무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안

(이상 2건 11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15건 12월 29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6일 천정배 · 김원길 · 한화갑 · 김경재 · 김명규 · 남궁진 · 박광태 · 손세일 · 이규정 의원 외 95인 발의)

(12월 2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이상 3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청원 제출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 교부에 관한 청원

(1998년 12월 24일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54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김정남 외 2인 으로부터 이재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9월 15일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1124 함지그린아파트 108동 대책위 위원장 소용화로부터 김형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수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2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78-6 신우빌딩 301호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회장 김경석 외 1762인으로부터 조홍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26일 정무위원장 보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 중구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외 2인으로부터 김영선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졸속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1998년 8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외 4인으로부터 김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28일 정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서면질문서 제출

조세감면현황 및 전통건조물에 관한 질문서

(12월 24일 김문수 의원 제출)

12월 26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민간기업의 교도작업참여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환란위기 수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외채협상과 관련 마크워커 변호사 등의 수교훈장
수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안’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4건 12월 21일 정부 제출)

기아사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2월 22일 정부 제출)

외교통상부 감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2월 24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